

# 조선 개항장의 감리서(監理署)와 기록\*

- 부산항을 중심으로 -

## The Superintendent Office (Gamriseo) at the Open Ports in Joseon Dynasty of Korea and Related Records: Focused on the Busan Port

송 정 숙 (Jung-Sook Song)\*\*

### 목 차

1. 머리말	4.1 교섭 기록
2. 부산항의 개방 과정	4.2 재판 기록
3. 감리서의 직제와 설치	4.3 경무기록
3.1 감리서의 직제	4.4 통상 기록
3.2 부산항의 해관세 수세	4.5 목민 기록
3.3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	4.6 일록(日錄)
4. 감리서 기록의 유형과 내용	5.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는 개항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감리서의 설치과정 및 관련 기록을 부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감리서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항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리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리서의 직제와 설치와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감리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을 감리의 기능에 따라 교섭기록, 재판기록, 경무기록, 통상기록, 목민기록, 일록의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각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부산항의 개방과 관련한 조약과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칙령들은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와 『한말근대법령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다.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원본 문서는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목록이나 해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각사등록』과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리서 관련 기록들 가운데 『고종실록』만 국역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역과 원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주제어: 부산항, 감리서, 해관, 감리서 기록, 개항장

### <ABSTRACT>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Japan began signing procedures from February 1876. Thus, Busan port became an open port to foreign vessels. This has resulted in Busan port becoming the greatest port in Korea. Because of this, the Superintendent Office (Gamriseo, 監理署) was established at 1883 but was later abolished in 1906. In this thesis, the author explored the opening procedure of Busan Port as an open port, the structure of the positions in the Superintendent Office, and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types, and contents of records of Gamriseo that were created or received. Records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were classified into diplomatic records, judge records, police records, customs records, administrative records, and the daily records of the institution. Most of the original documents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were preserved at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hile some were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Asiatic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Keywords: Busan Port, the Superintendent Office (Gamriseo), the maritime customs, records of Gamriseo, an open port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접수일: 2013년 11월 23일    ■ 초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55-281, 2013.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255>>

## 1. 머리말

조선시대는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거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고려 말부터 계속 침입해 오는 왜구들에 대한 회유정책으로 조선 정부는 삼포(三浦: 부산포·제포·염포)에 왜관을 설치하여 이곳에 왜인의 거류를 허용하였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왜관 이내로 제한하였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사형에 처한다는 엄한 규율이 있었다(송정숙 2011, 275-276). 하지만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이후 부산(1876), 원산(1879), 인천(1882)을 비롯해 주요 항구가 개방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거류지 관계 사무와 통상사무를 전담하고 처리할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감리서(監理署)이다.

다시 말하면, 개항 이후 상업활동 등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들이 거주·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개항장이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의 주거지로 규정된 곳이 조계(租界)이다. 이러한 개항장·조계에서의 외국인 활동을 관할하는 부서가 감리를 책임자로 하는 감리서이다. 감리서는 개항장에 설치된 해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면서, 동시에 개항장 외국인들의 상업 및 기타 활동을 관리하는 ‘넓은 의미의 지방 외교관서’이다(민희수 2012, 140).

이 연구는 개항 이후 급격한 변동을 겪었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공간변모와 관련한 기록 연구의 일환으로 개항장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감리서의 설치과정 및 활동과 관련

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항장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출입을 조정에 보고하고 개항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감리서였다. 비록 내적 동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근대기에 있어서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 도입되는 통로로서 이른바 개항기의 정치, 사회, 경제상을 감리서 기록을 통해 명료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의 이현중(1975), 김경태(1972), 민희수(2012), 무역학의 윤광운과 김재승(2006) 등 몇몇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활발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감리서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개항장인 부산항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리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리서는 무슨 기관이며, 언제 어떻게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는가? 감리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감리서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기록들은 어떤 문헌에 전제되어 있으며,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이나 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이 반복되는 칙령 등이 게재되는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자료와 법령집, 당시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나 문서철 등이 보관되어 있는 규장각의 기록과 이러한 문서 등이 영인 또는 전제되어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각사등록(各司謄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등과 당시 감리서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민건호의 일기인 『해은일록(海隱日錄)』 등을 참고할 것이다.

## 2. 부산항의 개방 과정

조선은 자의든 타의든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영토를 개방하고 외국과 통상하기 시작하였다.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법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조선이 일본과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영토를 개방하였는지를 부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정숙 2011, 277-281).

(1) 1876년 2월 2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에서 부산 초량항을 개항장으로 한 후 ‘중전의 관례와 세견선(歲遣船) 등의 일은 없애버리기’로 하였다.

(2) 1876년 7월 6일 서명한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에서 부산 초량항의 일본관(日本館), 즉 왜관에다 그 전에 설치하였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 같은 것은 지금부터 없애고,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로부터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로 정하며, 동래부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1876년 12월 17일에 체결한 『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에 의해 중전의 초량왜관 지역이 일본인의 전관거류지가 되었다.

(4) 1882년 7월 17일에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에서 이제부터 부산, 원산, 인천의 각 항구에서 자유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다시 사방 50리씩 정하고, 만 2년

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각각 100리씩으로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일본국 공사와 영사 및 그 수원(隨員)들의 가족은 조선의 내륙 지방 각 곳을 유력(遊歷)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1883년 6월 22일에 『조선국한행이정약조(朝鮮國間行里程約條)』, 즉 조선국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제2조에서 부산항은 동쪽으로 기장까지, 서쪽으로 김해까지, 남쪽으로 명호까지, 북쪽으로 양산까지로 하였다.

(6) 1884년 10월 12일에 『조선국한행이정약조 부록(朝鮮國間行里程約條附錄)』, 즉 일본사람들이 조선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이수에 관한 약조의 부록이 체결되었다. 부산항의 경우를 보면, 동쪽 한계는 남창, 북쪽 한계는 언양, 서쪽 한계는 창원 마산포 삼랑창, 남쪽 한계는 천성도(天城島)이다.

조선이 일본인의 행동범위를 왜관으로 제한하고 왜관 문을 나서면 사형에 처한다고 『약조제찰비(約條製札碑)』에서 명기한 것이 1683년으로서 이후 1876년 개항 전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즉 쇄국 정책 하에서는 외국인은 정해진 상관(商館)의 경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그런데 임오군란으로 조선정부가 외교적으로 수세에 물리게 되자 『조일수호조규속약』을 강요하여(孫禎睦 2001, 80-82)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지 6년만인 1882년 7월에 일본인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범위를 부산, 원산, 인천의 각 항에서 사방 50리로, 2년 후에는 사방 100리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1884년 10월에는 일본인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범위가 동쪽으로는

부산에서 기장을 넘어 현재의 울주군까지, 서쪽으로는 김해, 진영, 장유를 넘어 마산·창원까지, 북쪽으로는 양산을 넘어 언양까지, 남쪽으로는 부산시 가덕도까지 확대되었다. '한행이정(間行里程)'이라 함은 한정된 구획범위 내에서 단순히 자유롭게 다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거주와 통상을 허락한다는 뜻이다(손정목 2001, 82). 이처럼 일본인의 활동 범위가 부산·울산·경남 일대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조선 점유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조선이 일본과 1876년 2월 2일에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과는 1882년 4월 6일, 영국과 독일과는 1883년 10월 27일, 이탈리아와는 1884년 윤 5월 4일, 러시아와는 1884년 윤 5월 15일, 프랑스와는 1886년 5월 3일, 오스트리아와는 1892년 5월 29일, 벨기에에는 1901년 3월 23일, 덴마크와는 1902년 7월 15일에 『통상수호조약』을 맺었다.

조선이 일본에 대해 영토를 개방한 이후 1883년 영국과 수호조약을 맺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각 통상지역으로부터 100리 이내의 지방은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도록 통행을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 인근에서 일본인을 비롯한 이방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국제도시로 변모하였다.

개항 이후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수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개항전 일본인 거주자가 82명에 불과하였는데, 4년 후인 1880년에는 2,066명으로 25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1880년 일본영사관을 개설한 이후 일본전관거류지에 『地所賃渡規則(1880. 4)』에 이어 『家屋建築假規則(1880. 7. 19)』이 공포되면서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기(김태영, 이광로 1988, 68-69)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인 거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10년에는 21,928명으로 개항 당시 82명의 267배가 넘었다.

이처럼 개항장에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1897년 4월 3일자 독립신문은 론설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이 더 이상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이 지금은 혼주 사는 나라이 아니요 세계 각국과 교제를 흥논터이라 세계 사람이 다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 사는 터를 보고 조선 사람 생각 흥기를 조선에 오기 전 보다 더 천 하게 아는지라 ... (중략) ... 지방관들이 도회쳐에는

<표 1> 釜山港의 日本人數 累年表

( )는 戶數

年度	日本人	年度	日本人
1876	82	1895	4,953(953)
1880	2,066(402)	1900	6,607(1,083)
1884	1,750(430)	1905	13,364(2,363)
1889	3,033(628)	1910	21,928(4,508)

김태영·이광로 1988, 68 재인용

길을 정 하게 닥고 기탄을 좌우로 파 더러운 물건이 흘러 내려 가게 하며 대 쇼변을 사름 다니는 길 거리에 보지 못하게 하는거시 직무상에 때일 중헌 일이라 ... (중략) ... 인천 부산 원산 항구에 조선 마을들은 엇더케 흥약한지 외국 사름들이 그 근처로는 다니기를 어려워 하고 즈긔 나라 신문예들 편지들을 해야 조선 말을 넘으 분명히 광고들을 하니 ... (중략) ... 당쳐에 있는 감리들이 이런 일을 주션 하지아니 하여서 는 누가 다른 사름이 이런 일을 주션 하여 주지 아니 할터이요

위에서 조선은 이미 외국인의 내왕이 많으므로 외국인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것들을 보고 조선을 좋지 않게 본국에 말할까 염려하여, 외국인이 많은 항구에서는 개항장의 감독인 감리가 주선하여 청결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감리서의 직제와 설치

조선말 대한제국 시기 고종조의 감리서의 존재에 대한 기록은 주로 칙령으로 반포되어 관보에 게재되었고, 이는 『고종실록(高宗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연대기자료에 전재되어 있다. 1970년 국회도서관에서 편찬한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에는 1894년 6월부터 1910년 8월까지의 칙령 등 법령이 집대성되어 있다. 그 이전인 1883년 10월부터 1888년까지의 칙령은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10.31~1884.12.6)와 한성주보(漢城週報 1886.1.25~1888)에 게재되어 있다.

#### 3.1 감리서의 직제

감리서가 개항장에 설치되는 계기를 보면, 개항장에 통상하기 위한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출입이 번다해짐에 따라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3년 10월 19일 통상아문(通商衙門)에서 현재 통상하고 있는 세 항구의 해관(海關) 사무에 관하여 대원(大員)을 전임 파견하는 것이 옳겠으니, 행호군(行護軍) 조병직(趙秉稷)을 감리인천통상사무(監理仁川通商事務)로, 부호군(副護軍) 이현영(李顯永)을 감리부산통상사무(監理釜山通商事務)로 하고, 원산은 사무가 아직 복잡하지 않으니 덕원부사 정현석(鄭顯奭)이 감리를 겸임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漢城旬報 1883.10.31) 해관 사무를 전담할 감리(監理)가 임명되었다.

1883년 8월 20일 외아문에서 초기(草記)한 『해관감리설치사목(海關監理設置事目)』(민건호 발행년미상/2008. 6)에 의하면, 감리의 관직명은 ‘감리모항통상사무(監理某港通商事務)’라고 칭하며, 부산, 인천 감리는 정3품 당상관으로써 차출하여 이조에서 국왕의 비답을 받아 임명하나, 실제로는 겸대한다. 문첩(文牒)의 왕래는, 감사·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는 대등하게 이문(移文)함을 볼 때 감사·유수·병사·수사와는 대등함을 알 수 있다.

1896년(고종 33) 8월 7일(양력)에 비준하여 반포된 칙령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둘 것에 대한 관제 규칙』(『고종실록』 권34)에 나타난 감리의 임무를 보면, 감리는 각국 영사(領事)와의 교섭, 조계지, 일체 항 내의 사무를 관장하고, 항구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생명,

재산과 본국인에 관한 일체 소송을 각국 영사와 서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감리는 외부(外部)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항내의 일체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감리서는 외부 산하 기관이다.

李沂의 『海鶴遺書』 권2에서는 “서(署)는 관사(官舍)의 부분을 말한 것이므로 모든 지방에 관찰사에게 소속되지 않는 것은 이때 서(署)로 칭하여 구별하였다. 감리서도 관찰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이라 하여 ‘서(署)’로 출범했으나 사정에 따라 부사 또는 관찰사가 겸무하였다.

감리서의 직제는 1896년(고종 33) 8월 7일에 반포된 칙령 제50호의 “감리는 관찰사와 대등하게 상대하는데, 문서를 주고받는 것을 대등하게 조회하고, 각 부(部)에 관한 문제에 부딪치면 해당 부에 직접 보고하되 외부에도 보고하여 명백히 한다. 항구에 경찰 직무를 담당할 경무관과 총순(總巡)과 순검(巡檢)을 두는데, 감리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한다(『고종실록』 권34).”에서 보듯이, 감리의 관제가 관찰사와 대등하고 항구의 해관 업무뿐 아니라 경찰 업무까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리서 직원의 구성은 1883년 8월 20일에 초기(草記)한 『해관감리설치사목』에 의하면, 감리는 “장부(掌簿) 2인[1명은 본국인, 1명은 외국인], 서기·서리(胥吏)를 사무의 번잡함과 간결함에 따라 인원수를 적의하게 헤아려서 차출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한정하지 않고 감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도 장부(掌簿)로 임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92년(고종 29) 12월 22일(음)의 “부산항 감리서 번역관에 전 사과(司果) 현채(玄采)를 차

하할 것을 청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계”(『승정원일기』 고종 29년(1892) 12월 22일)를 볼 때, 개항장에는 외국인의 왕래가 많고 외국인과의 교섭 내지 통상 업무가 많으므로 감리서에 번역관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1896년(고종 33) 8월 7일(양력)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둘 때에는 “인천·동래·덕원·경흥에는 감리를 각각 1명씩 두고, 주사는 인천·동래·덕원에는 각각 3명씩 경흥에는 2명씩 두며 서기(書記)는 각각 2명씩을 두고 통역은 각각 1명씩을 둔다”(『고종실록』 권34)고 하여 부산[동래] 감리서는 1감리 3주사 2서기 체제였다. 1899년 5월 4일에 반포된 칙령(勅令) 제15호 『각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고종실록』 권39)에 의하면, “감리는 1명을 두되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주사는 4명을 두되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고 하여, 주사가 3년 만에 1명 증가하였다. 감리서의 사무가 1개과를 더 둘 만큼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 말기의 이기(李沂)는 그의 문집인 『해학유서(海鶴遺書)』 권2, “급무팔제의(急務八制議)”에서 1감리 5과[교섭과(交涉課), 통상과, 비서과, 서무과, 회계과] 5주사 체제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감리서의 위치는 『비변사등록』 1882년(고종 29) 11월 9일 “경상감사 이현영(李鱣永)의 災實 分等 장계에 대해 보고하고 대책을 묻는 의정부의 啓” 가운데 “동래부 사하면(沙下面) 신초량(新草梁) 신지(信地) 안에 감리서와 경찰서를 옮겨 지을 터의 전답 1결 13부 4속에 대해 부세를 면제하는 일입니다.”로 볼 때, 감리서는 신초량 일대의 정해진 토지인 신지 안에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1883

년 8월 20일에 초기(草記)한 『해관감리설치사목』(민간호 발행년미상/2008. 6) 제5조에서 “감리서 건물은 인천은 화도진사(花島鎭舍), 부산은 초량진사(草梁鎭舍)를 잠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기술된 것을 보면, 1883년 8월에는 부산감리서 건물은 1882년 11월 신초량 신지 안에 신축할 계획이었던 감리서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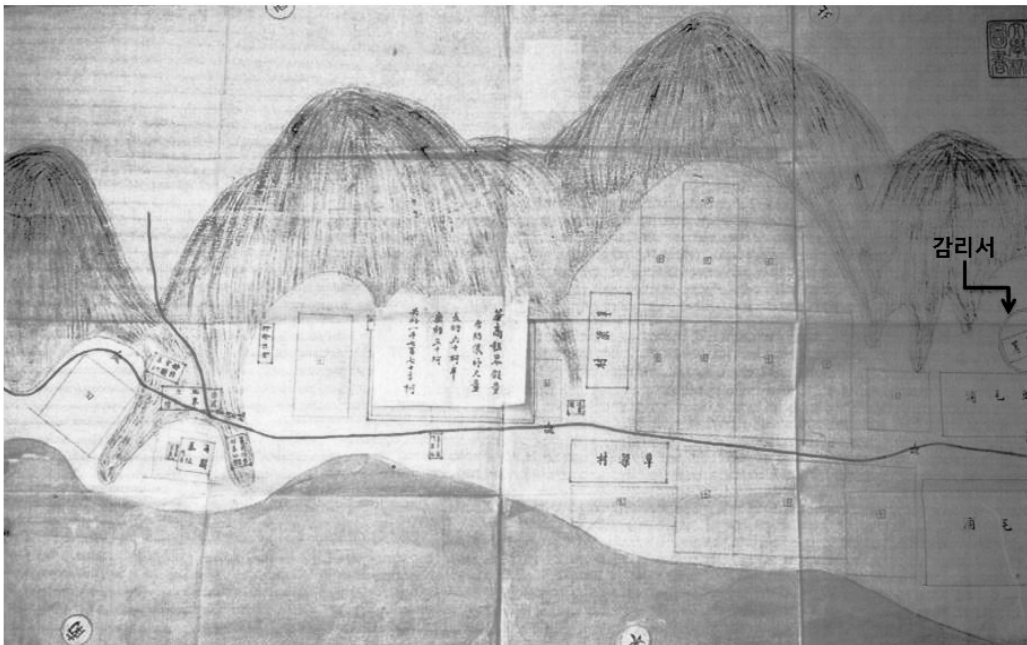
그런데 ‘초량진사’는 어디에 있는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것일까? 『해은일록』 1883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동래부에서 아침을 먹고 부산을 다. 이로 미루어 감리서가 출범할 당시에는 두모포에 있던 관찰소, 즉 관찰관[왜관 훈도가 개칭된 명칭]이 집무했던 곳(민회수 2012, 174)을 를 감리서로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량진이라 함은 두모포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878년 9월 3일에 조선정부는 두모포에 수세소인 해관을 설치했다가 6개월만에 폐지했는데, 1883년 12월 감리서가 출범할 때에도 이곳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침 아래 <그림 1>에서 두모포에 감리서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해은일록』 1892년 7월 25일자 기사에 “각국의 빈객을 초청하여 본서(本署) 낙성의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낙성된 감리서는 초량객사가 있던 현재 영주동의 봉래초등학교 자리이다.

1899년에 칙령 제15호 『각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 제6조에 감리서 위치로 “東萊[釜山]”(『고종실록』 권39), 즉 ‘동래감리서를 두는 위치는 부산’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때의 ‘부산’은 1892년 낙성된 감리서로 보인다.



<그림 1> 부산항약도(釜山港略圖, 奎 26055; 김기혁 2008. 247)

### 3.2 부산항의 해관세 수세:

1878. 9. 2 - 1878. 11. 26

개항장인 부산항에서는 개항 이후 감리서가 설치되기 이전 감리서 설치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 해관세를 수세하다가 중지되는 이른바 '부산해관세 수세사건'이 일어났다. 그 전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발단: 1876년 2월 26일에 「강화도조약」(일명 「丙子修好條規」)이 체결됨에 따라 부산항이 최초로 개항되었다. 개항장은 외국 상인의 거주, 통상이 허용된 공간일 뿐 아니라 인근 상인 및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상거래를 영위하고 여타의 개항장으로 넘나들 수 있는 출입구로도 작용했다(황은수 2010, 202-203). 해관세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기는 1878년(고종 15) 7월 19일 慶尙左道 暗行御史 李萬植이 別單(『승정원일기』)을 통해 화물출입처에 물품에 따라 세액을 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부터이다(윤광운, 김재승 2006, 201) 부산 개항 후 이 실책을 깨달은 조선정부는 해관을 설치하기를 위하여 1878년 8월 10일에 부산항 출입화물의 과세 징수를 위해 세목과 통행규칙 결정하고, 1878년 9월 3일에 조선정부는 두모포에 수세소인 해관을 설치하고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수입세 15~20%를 부과하였는데,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본국(조선) 상인에게만 관세를 징수하였다(윤광운, 김재승 2006, 201).

(2) 전개: 1878년 9월 14일에 일본관리관이 부산해관 설치가 병자수호조규에 위배된다고 동래부에 철폐를 요구하였고, 1878년 11월 6일에는 일본대리공사 花房義質가 부산에 와서 관세 징수를 항의하는 무력시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동래부사 윤치화를 비롯한 이른바 저항파로 지목되는 현지관리들은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으나 정부권력을 담당하고 있던 굴종파는 11월 26일에 부산 두모포 해관을 폐지하고 해관세 수세를 중지한다는 관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동래부사 윤치화(尹致和)는 해관세를 징수한 지 3달 만인 그해 12월 2일에 관세징수의 중단을 통고했다(金敬泰 1972, 696).

(3) 결말: 1878년 12월 19일에 부산 해관이 폐쇄되었음에도 일본은 1879년 3월 3일에 일본 대리공사 花房義質가 개항촉진과 부산해관 징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1879년 3월 24일에는 부산에 불법침입한 일본해군 39명과 모리배가 행패를 자행하였고, 이튿날인 3월 25일에는 일군관 60여명이 동래부청을 습격하여 국가 기관을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조선정부는 동래부사 윤치화를 대일교섭 불화의 책임으로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 3.3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

감리서는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는데, 그 전개 과정을 ① 감리서의 창설(創設)과 폐지(1883. 8. 19 - 1895. 5. 26), ② 감리서의 복설(復設)과 폐지(1896. 8. 7 - 1906. 9. 24)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3.1 감리서의 창설과 폐지:

1883. 8. 19 - 1895. 5. 26

조선정부는 일본에 이어 1882년 4월 6일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국과의 통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83년

8월 19일에 3개 항구[부산, 인천, 원산]에 해관 사무를 위하여 감리(監理)를 두고, 조병직·이헌영·정현덕을 인천·부산·원산 세 항구의 통상감리사무로 파견하였다. 초대 통상부산 감리사무로 부임한 이헌영은 1881년 개화정책을 위하여 문물 시찰의 밑명을 띄고 일본에 파견되었던 '朝士遊覽團[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서 조병직과 함께 세관 관련 부문에 대한 조사를 맡았으므로 해관업무의 전문가로 인정되어 통상감리사무로 부임하게 되었다(민희수 2012, 158).

1883년 8월 20일 외아문(外衙門)에서 감리서에 대해 초기한 『해관감리설치사목(海關監理設置事目)』(민건호 발행년미상/2008, 6)이 이루어짐에 따라 감리서가 출범하게 되었다. 사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83년 8월 20일 외아문에서 초기(草記)하여, 27일 세 항구의 감리를 차출하였다.

1. 관직명 '감리모항통상사무(監理某港通商事務)'라고 칭할 것.
1. 감리 1명은 정3품 당상관으로써 차출하여 이 조에서 국왕의 비답을 받아 임명하나, 실재는 겸대한다. 원산항 사무는 아직 간단하므로 덕원부사(德源府使)가 겸대하여 살필 것.
1. 세 항구 감리는 차례로 옮겨 근무하되, 원산에서 시작하여 부산·인천으로 옮길 것.
1. 월급은 동전(銅錢) 5백냥을 기준으로 하되, 해관세(海關稅) 수입 중에서 지급할 것.
1. 감리서 건물은, 인천은 화도진사(花島鎭舍), 부산은 초량진사(草梁鎭舍)를 잠시 그대로 사용한다. 원산은 부사가 겸대하므로 거론하지 말 것.

1. 관방(關防)은 '감리모항통상사무관방(監理某港通商事務關防)'이라고 주조할 것.

1. 문첩(文牒)의 왕래는,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는 대등하게 이문(移文)하고, 각 읍에는 관문(關文)으로, 다만 의정부와 내아문에는 첩보(牒報)로 할 것.

1. 진방(賑房) 한 곳은 해관에 설치하며, 장부(掌簿) 2인 가운데 1명은 본국인, 1명은 외국인인을 쓰되, 모두 감리 자의로 임명할 것.

1. 서기(書記)·서리(胥吏) 등은 모두 감리가 뽑으며, 인원수는 사무의 번잡함과 간결함에 따라 적의하게 헤아려서 차출할 것.

1. 진방(賑房)의 장부(掌簿)·서기(書記)·서리(胥吏) 등의 봉급은 세입(稅入)중에서 적의하게 헤아려 지급할 것.

외아문독판(外衙門督辦) 민영목(閔泳穆) 아뢰.

1885년(고종 22) 1월 13일에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서 감리부산항통상사무를 동래 부사 조병필이 겸대하게 할 것을 청하는 계(『승정원일기』)를 올리자 동래부사 조병필에게 부산항 감리통상사무를 겸대하라고(『고종실록』 권22) 명하였다. 이로써 감리서 사무를 전담할 부산항감리사무를 임명한 지 1년 5개월만에 부산감리[감리부산항통상사무]는 동래부사가 겸임하게 되었다.

1895년 5월 1일에 반포된 칙령 제98호(1895년 5월 26일 공포)에서 전국을 23부 331군으로 행정구역 개편함에 따라 동래부가 동래관찰부( 관찰사)로 승격되었다. 1895년 5월 15일에 부산에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895년 5월 26일에 칙령 제99호 『인천, 부산,

원산 3항 감리서를 폐지할 데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다(『고종실록』 권33). 1895년 6월 12일 칙령 제131호에서 전 감리서 사무는 각 당해 개항장 소재지 관찰사로 관장하게 하였다. 1895년 6월 12일 칙령 제131호 「전 감리서에서 주관하던 사무를 각 당해 군수에게 소속시키는 안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1895년 10월 6일 칙령 제176호, 각 항에 지사(知事)를 두는 건을 반포하였다(『고종실록』 권33). 이미 반포한 칙령 제13호 제2조의 “개항장 소재지에 부청(府廳)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전 감리서 사무를 관할 관찰사에게 속하게 하지 말고 각해(各該) 군수에게 관장하게 함” 가운데 ‘各該 군수 이하’를 삭제하고 「지사를 두어 관장케 하고 해당 군수를 겸임케 함」을 추가하였으며, 그 다음 「제3조 지사는 該港 경무관 이하를 지휘감독함」을 추가하였다(『고종시대사』 제3집). 이에 따라 부산항의 감리 업무는 동래 관찰부의 관찰사 소관이 되고 감리와의 겸직은 폐지되었다.

### 3.3.2 감리서의 복설과 폐지:

1896. 8. 7 - 1906. 9. 24

1896년(고종 33) 8월 7일에 칙령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둘 것에 대한 관제 규칙」을 비준하여 반포하였다(『고종실록』 권3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둘 것에 대한 관제 규칙>

- 제1조 감리는 각국 영사(領事)와의 교섭, 조계지(租界地), 일체 항 내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 감리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체외하여

임명하고 해임하는데 외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감리의 인장(印章)과 도장(圖章)은 외부(外部)에서 만들어 보내어 쓰게 한다.

제4조 감리 1명 이하 속관(屬官)과 원역(員役)의 정원수, 월급, 경비는 별표(別表)로 정한다.

제5조 감리가 일을 보는 처소는 본 항구에 그전부터 있던 청해(廳廡)를 그대로 쓰고 감리서라 부른다.

제6조 감리는 항구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생명, 재산과 본국인에 관한 일체 소송을 각국 영사와 서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감리서 주사 중 1명은 감리가 선발해서 자체로 임명한 다음 외부에 보고하여 정식 임명하며 그 나머지 인원은 외부(外部)에서 선발 임명한다.

제8조 항구에 경무관을 두되 경무관 이하 총순(總巡)과 순검(巡檢)의 정원수, 일체 비용은 내부에서 적당히 정한다.

제9조 경무관은 내부에서 임명 해임하지만 경찰 직무는 감리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한다.

제10조 감리는 관찰사와 대등하게 상대하는데 문서를 주고 받는 것을 대등하게 조회하고 각 부(部)에 관한 문제에 부닥치면 해당 부에 직접 보고하되 외부에도 보고하여 명백히 한다.

제11조 감리는 각 군수와 각 항의 경무관에게 훈령과 지령을 내리며 목사를 제외한 각 부윤(府尹)에게는 항(港)의 사무에 관한 사건도 훈령과 지령을 내린다.

제12조 항구의 상품 출입과 세금 항목 수량을 감리는 직접 검열하여 매달 마지막에 탁

지부(度支部)에 자세히 보고하고 외부에도 보고하여 명백히 한다.

제13조 외국인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왕래하는 상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장사일이 흥성하게 하되 이익을 독차지하는 자가 있어서 장삿길을 방해하는 것은 일체 엄격히 막는다.

제14조 감리서의 봉급과 경비는 외부에서 매년 탁지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정한 후 항목별, 월별표를 외부에서 만들어 보낸 대로 시행한다.

제15조 각 감리, 주사, 원역(員役)의 봉급과 각 조항에 따르는 경비는 해당 항구의 세금으로 계산하여 지불한다.

제16조 각 감리와 주사의 여비는 국내 여비 규칙에 의거하여 지불한다.

제17조 각 감리가 관입관(判任官)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관리 임명 규례에 의하여 외부(外部)에 설명하여 보고하고 제기한다.

제18조 감리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청할 때에는 외부에 보고하여 외부 대신이 본 감리서의 주사로 서리(署理)를 정한다.

제19조 감리 이하가 임명된 후 출발하는 기일과 각종 공문에 이름을 직접 쓰는 것과 부임한 날부터 봉급을 지불하는 각 항목의 규칙은 지방 관제를 모방하여 시행한다. 별표(別表)는 대략 이러하다. [인천, 동래, 덕원, 경흥에는 감리를 각각 1명씩 두고 주사는 인천과 동래, 덕원에는 각각 3명씩, 경흥에는 2명씩 두며 서기는 각각 2명씩을 두고 통역은 각각 1명씩을 둔다.]

1896년(고종 33) 8월 7일(양력)에 내부(內

部)와 외부(外部)에서 연서(聯署)로 각 개항장의 감리에게 해당 지방의 부윤(府尹)을 겸임시킬 것에 대한 사항을 제의하니 승인하였다. 동래부윤 민영돈(閔泳敦)을 동래감리 겸 동래부윤(東萊監理兼東萊府尹)으로 임명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3등으로 올려주었다(『고종실록』 권34).

1896년 8월 10일에 칙령 제52호 「각 개항장의 경무서 설치에 관한 건」을 제가하여 반포하였는데(『고종시대사』 4집), 이 가운데 동래감리서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인천·동래·덕원·경흥 각 개항장에 경무서를 설치하여 해당(該港) 경찰사무를 掌理케 함. 제4조 경찰관은 該港 감리의 지휘를 承하여 소속 직원을 감독함.

제5조 총순은 該港 감리의 명을 承하고 경무관의 지휘를 從하여 항내 경찰사무에 종사하되 경무관 설치치 아니한 장소에는 該港 감리의 지휘를 承하여 소속 직원을 감독함.

제6조 경무관리의 징계는 순검 이하는 該港 경무관이 專行하고 경무관과 총순은 該港 감리가 內部로 報하여 內部에서 시행함.

1897년 12월 23일에 칙령 제41호, 「각 개항장(開港場)의 관제(官制)와 비용을 첨가할 데 대하여」를 반포하였다. “각 개항장 감리 관제 중에서 인천, 동래, 덕원(德源)에 주사 각각 3명과 무안, 삼화(三和)에 각각 2명이던 것을 다 각각 4명씩으로 정원을 둔다”(『고종실록』 권36)고 하여 인천, 동래, 덕원, 무안, 삼화 감리서가 1감리 4주사 체제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1899년 5월 4일에 칙령(勅令) 제15호, 「각

항 시장 감리서(市場監理署) 관제와 규칙에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다(『고종실록』 권3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칙령(勅令) 제15호 「각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

제1조 각 개항 시장에 감리(監理)를 둔다.

제2조 감리서(監理署) 직원은 아래와 같다.  
감리는 1명을 두되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주사(主事)는 4명을 두되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3조 감리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폐하에게 보고하여 임명 또는 해임하며 외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각 나라 영사(領事)와 교섭하고 항내의 일체 사무를 주관한다.

제4조 주사는 외부 대신이 전적으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한 명은 감리가 자체로 추천하여 보고하고 임명한다.

제5조 주사는 감리의 지시를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데 만약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감리가 보고하여 징벌할 것을 청한다.

제6조 감리서를 두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봉급과 역원의 정액, 경비는 약한다].  
인천[제물포], 동래[부산], 덕원[원산], 경흥[경흥], 무안[목포], 삼화[증남포], 옥구[군산포], 창원[마산포], 성진[성진], 평양[평양]

제7조 감리의 인장(印章)은 외부(外部)에서 주조한다.

제8조 감리는 각 항의 경무관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제9조 감리는 관찰사와 대등하게 문건을 발송하고 목사, 부윤, 군수 이하는 훈시하거나 지시한다.

제10조 감리가 각 부(部)와 부(府)에 관한 사무는 직접 보고하되 해당 사건은 외부에 일체 보고하여 밝힐 것이다.

제11조 감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외부 대신이 해당 서(署)의 주사로 대리하게 한다. 그러나 감리가 말미를 청하여 주사가 대리할 때는 감리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한 분을 날짜를 계산하여 옮겨붙인다.

제12조 감리는 다른 군의 서리(署理)와 사관(査官), 검관(檢官)의 일을 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군의 일이라도 외국인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내부(內部)에서 외부(外部)에 공문을 내어 청해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는 상품을 운반하는 것과 세금의 많고 적은 것을 매 월말에 탁지부(度支部)에 보고하되 외부(外部)에도 일체 보고하여 밝힌다.

제14조 개국 505년 칙령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제와 규칙」, 광무 원년 칙령 제33호 「각 개항장의 감리 관제 중에서 그 일부를 첨부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해 칙령 제41호 「각 개항장의 감리서 관제와 비용에서 그 일부를 첨부하는 것에 대하여」를 모두 폐지한다.

1904년 5월 9일(양)에 칙령 제14호, 「각 항구 시장 감리서 관제와 규정 중 일부 개정 안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고종실록』 권44). 1904년

12월 12일(양)에 칙령 제31호, 각 항구 시장감리서의 위치를 개정하였다(『고종실록』 권44). 1905년 2월 26일(음)에 칙령 제17호, 『각 개항 시장경무서의 관제』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고종실록』 권42). 『승정원일기』 1906년 6월 19일(음)에 겸임 부산항재판소 판사에 동래 감리 김교헌을 임명하였다.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7호, 각 항구 시장의 감리를 없애고 그 사무를 부윤(府尹)에게 넘기며 제주 목사를 없애고 그 사무는 평양시의 사무와 함께 모두 각각 해당 관찰사에게 소속시킬 데 대하여, 이를 비준하여 반포하였다(『고종실록』 권43).

1906 10월 1일(양)에 내부(內部)에서 지방관제를 개정할 데 관한 훈령을 13도에 내렸다. “시세에 맞게 감리서를 폐지하고 부윤을 두어 관찰사와 부윤에게 그 직권을 위임하여 사무를 통일하고 편리하게 하라. 무릇 관찰사나 부윤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뜻을 깊이 본받아 안을 다스리는 정법(政法)과 밖으로 교섭하는 사무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게 할 것이며, 각군(各郡) 구역을 정리하는 것도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이니 관하의 부윤, 군수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문서와 장부를 주고받는 절차를 속히 끝내어 혹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수세(收稅) 경찰에 대해서는 다시 명령이 있을 것이니 이 훈시를 속히 관하 각 군에 신칙하여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고종실록』 권47) 하였다. 이처럼 1906년 지방의 관제를 개정하여 각 항구의 감리를 부윤(府尹)이라 하였다(『梅泉野錄』 권5, 光武 10년). 이로써 1883년 출발하였던 감리서 제도는 종식되었다.

#### 4. 감리서 기록의 유형과 내용

기록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서류를 축적해 놓은 것으로 지속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존하고 있다.

감리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은 감리서의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896년 8월 7일 반포된 칙령 제50호 『각개항장감리서 복설 관제규칙(各開港場 監理署 復設 官制及規則)』(『고종실록』 권34)에서 감리서의 기능은 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제1조 감리는 각국 영사 교섭과 조계와 일체 항내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 (2) 제6조 감리는 항내 거류하는 외국인의 인명 재산과 본국인의 관한 일체 소송을 각국 영사와 상호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3) 제8조 항구에 경무관을 두되, ... 제9조 경무관은 내부(內部)에서 임명·해임하지만 경찰하는 직무는 감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4) 제12조 항구에 상화진출(商貨進出)과 세항다과(稅項多寡)를 감리가 궁검하여 매월 종(終)에 탁지부(度支部)에 상보(詳報)하고 외부(外部)로도 보명한다.
- (5) 제13조 외국인거류지에 거생하는 인민과 내왕하는 상고(商賈)를 별반 보호하여 상무를 창왕케 하되 각리(權利)하는 자가 있어 상무에 방해됨을 일체 엄방한다.

1899년 5월 4일 반포된 칙령 제15호 『각항시

장감리서 관제규칙(各港市場監理署 官制及規則)에는 감리서의 기능이 제3조, 제8조, 제13조에 나타나 있다.

- (1) 제3조 각국 영사의 교섭과 항내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 (2) 제8조 감리는 각 항 시장 경무관 이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 (3) 제13조 감리는 상화운출(商貨運出)과 세항다과(稅項多寡)를 매월 종(終)에 탁지부(度支部)에 보(報)하되 외부(外部)에도 일체 보명한다.

이 두 칙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서의 기능과 관련 기록을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감리서의 업무는 영사관 업무, 재판소 업무, 경무청 업무, 해관 업무의 넷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리의 위상은 개항장에서 각국 영사와 교섭하는 외교관, 개항장의 재판소와 경무서, 해관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아울러 감리서 창설 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감리는 지방관을 겸무하므로 목민관의 업무가 추가된다. 그리하여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기록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크게 ①

<표 2> 칙령에 나타난 감리서의 기능과 관련 기록

	1896년 8월 7일	1899년 5월 4일	감리서의 업무	감리의 위상	관련 기록
칙령명	칙령 제50호 『각개항장 감리서 복설 관제규칙』	칙령 제15호 『각항시장감리서 관제규칙』			
감리서의 기능 1	제1조, 감리는 각국 영사 교섭과 조계와 일체 항내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제3조, 각국 영사의 교섭과 항내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영사관 업무	외교관	교섭기록
감리서의 기능 2	제8조, 감리는 항내 거류하는 외국인의 인명 재산과 본국인의 관한 일체 소송을 각국 영사와 상호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재판소 업무	재판소 감독	재판 기록
감리서의 기능 3	제8조, 항구에 경무관을 두되, ... (제9조) 경무관은 내부(內部)로 진퇴하나 경찰하는 직무는 감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 감리는 각 항 시장 경무관 이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경무서 업무	경무서 감독	경무 기록
감리서의 기능 4	제12조, 항구에 상화진출(商貨進出)과 세항다과(稅項多寡)를 감리가 궁검하여 매월 종(終)에 탁지부(度支部)에 상보(詳報)하고 외부(外部)로도 보명한다.	제13조, 감리는 상화운출(商貨運出)과 세항다과(稅項多寡)를 매월 종(終)에 탁지부(度支部)에 보(報)하되 외부(外部)에도 일체 보명한다.	해관 업무	해관 감독	통상 기록
감리서의 기능 5	제13조, 외국인거류지에 거행하는 인민과 내왕하는 상고(商賈)를 별반 보호하여 상무를 창왕케 하되 각리(權利)하는 자가 있어 상무에 방해됨을 일체 엄방한다.		해관 업무	해관 감독	통상 기록

교섭 기록, ② 재판 기록, ③ 경무 기록, ④ 통상 기록, ⑤ 목민 기록의 다섯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외에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생산하는 일지류인 ⑥ 일록(日錄)을 추가하면, 감리서 기록은 여섯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리서 기록을 위와 같이 구분된 유형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교섭 기록

감리의 첫번째 임무는 조선정부를 대표하여 “각국 영사와 교섭하고 조계와 일체 항내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 수행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감리조일본영사(釜山監理照日本領事, 漢城週報, 1886.9.13)

照覆. 접수한 貴의 내용은 『絶影島の石炭庫 부지의 서편 沿岸을 잠시 빌어 貿易場으로 정하였으니 物貨를 저장하기 위하여 小屋을 建造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뜻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該病이 중식되면 위의 장소에 건조한 小屋을 즉일로 철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모두 闕悉하였습니다. 影島の炭庫 서편 沿岸을 잠시 빌려주어 가건물을 짓고 物貨를 저장하게 하되 疫病이 중식되는 대로 즉시 철거하겠다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小屋을 건조하는 것은 張大한 일인 것 같아서 실로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귀하께서는 商民들에게 분부하여 단지 가건물만 지을 것이요, 屋宇를 건조하지는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敬覆.

丙戌年 5월5일, 東萊府伯兼監理事務 金鶴鎭.  
代理領事 宮本 貴下.

위 문서는 1886년 5월 5일에 동래부백검감리 사무 김학진이 일본 대리영사 궁본(宮本)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문서의 제목, ‘釜山監理照日本領事’에서 ‘照’는 ‘알리다’의 뜻이고, 문서의 처음에 있는 ‘照覆’은 ‘물어 온 데 대하여 답한다’는 뜻으로 일본영사가 부산감리에게 의견을 묻는 ‘照會’에 대한 부산감리의 답변이다. 답변 내용은 절영도 석탄고 부지 서편 연안에 소옥(小屋) 짓겠다는 사안에 대해 가건물만 짓지 않을 수 없다는 답신이다.

이 날의 이 결정 때문에 부산감리를 문책하려는 기사가 『고종실록』 1893년(고종 30) 6월 10 일조에 보인다.

통리 교섭 통상 사무 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제의하였다. “부산 감리의 보고를 보니, ‘일본 상인들이 절영도(絶影島)에서 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 마음대로 지은 것을 책망하고 즉시 헐어버리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이른바 기선회사(汽船會社)가 일본 상인들과 방금 약조를 맺자마자 금방 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변경 형편으로 보면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다시 그 감리로 하여금 그렇게 약속한 것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보고하게 하여 될수록 엄하게 징벌할 것이며 이제부터 각별히 단속하여 감히 전과 같이 제멋대로 집을 짓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감리를 말하더라도 잘 신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과오를 추궁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책망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승인하였다(『고종실록』 권30).

위와 같이 부산항감리서와 영사관 간에 왕복한 문서를 묶어서 책으로 만든 문서철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피아왕복서등록(彼我往復書贈錄)**』(奎 18134) 1886년(高宗 23) 부산항의 通商·關稅 관계기관과 日·淸 양국 영사관 사이에 오고간 照會와 照覆 등을 모아 부산항감리서에서 편한 책이다. 表題는 〈丙戌八月日以丁亥三月初四日至 井付 彼我往復書贈錄〉이라 되어 있다. 日·淸 양국과의 통상사무와 租界에 관한 사무처리 및 關稅徵收문제에 대한 公文들이 많이 들어 있다. 개항 후 개항장에서의 통상관계 사정과 租界 문제를 보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이외에 1888년(고종 25) 3월부터 1906년(광무 10) 12월까지 동래감리서와 일본영사관 간에 내왕한 문서(原案, 謄本)를 동래감리서에서 모아놓은 『일안(日案)』(奎 18120 00)과 1893년(高宗 30) 7월부터 1902년(광무 6) 12월까지 駐釜日本領事館에서 동래감리서에 보내온 공문의 原綴인 『일조(日照)』(奎 18144 00) 등이 있다.

#### 4.2 재판 기록

『조일수호조규』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영사를 파견하여 주재시키고 일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일본영사가 처리한다.”고 하였다. 부산항 개항 후 일본 영사관이 개설되고 영사가 파견되어 조선인에게 불리

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95년에 개항장에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동래부윤이 개항장의 총책임자였던 동래감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개항장재판소가 신설되자 감리가 재판소판사도 겸직하였다. 이는 1900년 8월 22일(음)에 “겸임 부산항재판소판사에 동래감리 겸 동래부윤 박병익을 임용하였다”(『승정원일기』)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부산감리서첩정(釜山監理署牒呈)』(奎 24211)

1891년 2월에 부산감리서에서 통리고섭통상사무이문으로 보낸 첩정 및 보고서로 제주의 양민 두 사람이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관한 문서들이다. 奎 24211 본은 2월 6일(양력 3월 15일)에 보고된 것으로, 1887년 5월에 제주도민 이만송(李晩松)이 일본인 古屋利涉에 의해 살해된 일과 1890년 5월에 제주민 양종신(梁宗信)이 일본인 荒木坂四郎에게 살해된 사건에 대한 처리 경과를 보고한 첩정이다. 일본 측에서 범인을 체포하여 나가사키(長崎)재판소로 보내어 재판을 하였는데 얼마 후에 일본 측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인들을 방면하였다는 재판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말한 후에, 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조선과 일본 간에 왕래한 공문서들의 내용을 기록하여 올려 보내니 이 내용을 일본 공사에게 통지하여 피해자들이 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4.3 경무 기록

감리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개항장 경찰서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부산 감리가 부산항 경찰서의 부채 상황을 두고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과 주고 받은 문서를 볼 수 있다.

釜山警察署公債請算에 관한 件(강문식 해제, 奎 24113)

1892년 부산항 경찰서의 負債 상황에 관한 첩정으로, 내용 중에는 경찰서의 부채 문제를 놓고 경찰서와 부산 감리, 그리고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사이에서 오고 간 공문들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항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찰서의 운영 경비는 일정량의 뭇돈을 加沙里에 붙여서 그곳에서 나오는 剩餘를 취하여 조달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서를 설치한지 수년이 지난 현재 이익이 없음은 물론이고 자본금의 손실도 2만여량에 이르러 경상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으며,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1887년 1월부터 1891년 8월 사이에 외국인 등에게서 대출한 금액도 3만여량에 이르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4 통상 기록: 해관 업무

1896년 6월 28일 「각개항장 감리서 복설 관제규칙」 “제12조, 항구에 상화진출(商貨進出)과 세항다과(稅項多寡)를 감리가 궁검하여 매월 종(終)에 탁지부(度支部)에 상보(詳報)하고 외부(外部)로도 보명한다.”에서 보듯이, 감리는 기본적으로 해관 감독자로서 수세 상황의 중앙 보고 및 각종 면세조치 등 제한적인 관세행정을 수행하였다(민희수 2012, 179).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감리서의 기록 가운데

해관 감독자로서 감리의 기능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상당수 볼 수 있다.

감리는 상화운출과 세항다과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에 탁지부와 외부에 보고해야 했다. 감리의 문서 왕래는 “문첩(文牒)의 왕래는,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는 대등하게 이문(移文)하고, 각 읍에는 관문(關文)으로, 다만 의정부와 내아문에는 첩보(牒報)로 할 것(민건호 발행년미상/2008, 6)이라고 되어 있다. 감리가 탁지부와 외부(外部)에 보고하는 월별 수세상황을 보고하는 문서는 ‘첩보(牒報)’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관보에 게재되고 있으며, 1883년부터 1889년까지는 漢城旬報와 漢城週報에서 볼 수 있다.

4.4.1 해관세 수세(收稅) 보고

조선은 1876년 2월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1882년 이후 청나라 및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외국와의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개항장이나 양화진·한성 등에 개시장에서는 멕시코 은화와 청나라의 마제은, 일본 은화·지폐, 러시아 루블 은화 등 외국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 은화는 멕시코 국내 뿐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필리핀·중국·인도차이나 등 동남아시아 각지에서도 널리 유통되었다. 멕시코 은화는 개항 이전에는 주로 청나라 상인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었고, 개항 이후 특히 1883년 각 개항장에 해관이 설치된 이후에는 관세 수납화폐로 유통되거나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는 멕시코 은화가 중량이나 품위가 일정하여 가치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106-107).

1866년(고종 3)에 악화(惡貨)인 고액의 당백전(當百錢)을 주조 유통하면서부터 근대 은본위 제도를 수용하는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이 공포 시행되는 1894년(고종 31)까지는 화폐경제의 혼란기라고 할 수 있다. 1883년에는 격증하는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당오전을 주조 유통하는 동시에 근대 금·은 본위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상설 조폐국인 전환국(典圜局)을 설치하였다. 1887년 10월에는 남대문 근처에 경성 전환국을 완공하였다. 정부의 주체적인 화폐 제도의 근대화화를 위한 시도는 1884년에 일본의 영향 밑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화폐 제도를 본떠서 은본위제를 실시함으로써 화폐 제도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이정수, 김희호 2006, 28-29). 그리하여 우리 화폐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나 민간에서는 통용되었다.

조선후기의 화폐 단위를 보면, 주화인 상평통보 1개 = 낚[葉]은 1푼[文]이고, 10푼이 1전(錢) 10전이 1냥(兩)이었다. 1894년에 조선정부가 은본위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에서 쓰던 멕시코 은화의 단위인 원(元)을 차용하여 신식화폐 5냥을 1원으로 헤아렸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11).

각 항의 감리는 상품의 출입과 세금 항목 수량을 매월 말에 탁지부(度支部)와 외부(外部)에 보고할 책임에 있다. 부산감리서에서도 부산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수세한 내역을 매월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가 당시의 관보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찾을 수 있다.

① 감리부산항통상사무첩보(監理釜山港通商

事務牒報, 漢城旬報, 1884.5.5)

이 달[1884년 5월] 9일 監理事務 李鏞永이 정부에 첩보하기를 「甲申[1884년] 2월 1일 出口·入口收稅를 책으로 만들어 올려보내기에 이에 첩보합니다」하였다.

甲申 2월

入口 當5錢 84兩7錢8分, 1백32文이 1元인데  
합계 64元1角2仙7厘5毛이다.

1文錢 5천4백1兩5錢4分, 5백50文이 1元인데  
합계 9백82元9仙7厘5毛..

英銀 8백88元5角9仙,

出口 當5錢 9兩8錢4分, 1백32文이 1元인데  
합계 7元4角5仙2厘5模이다.

1文錢 4천2백10兩8錢8分, 5백50文이 1元인데  
합계 7백65元6角1仙5厘, 英銀 3元6角,

噸稅 1文錢 4백22兩8錢4分, 5白文이 1元인데  
합계 84元5角6仙7厘5毛, 英銀 2백43元,

총계 3천39元1角5仙에서 銀行局 경비 7元6角을 빼면

실제 합계액은 3천31원5角5仙이다.

이 기록은 1884년 2월 한 달 동안의 出口·入口 수세 현황을 3달 후인 5월 9일에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여기에서 “1文錢”이라 함은 개항 당시 조선에 주로 유통되고 있었던 화폐로서 엽전(葉錢) 혹은 한전(韓錢)이라고 불리는 동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 1개[1枚=1文錢]를 가리킨다(김호범 1991, 104). “當5錢 84兩7錢8分, 1백32文이 1元”에서 元은 영국 은화를 가리키고, 액면가 5전인 당오전 132개가 1원으로 교환됨을 말한다. “1文錢 4천2백10兩 8錢8分, 5백50文이 1元”에서는 액면가 1전인

상평통보 550개가 1원으로 교환됨을 말한다. 이것이 1884년 2월의 환율이다.

교환가치를 보면 당오전 132개는 액면가가 660전이지마는 교환가치는 상평통보 550개, 즉 550전으로 통용되는 것을 볼 때, 당오전은 평가 절하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當5錢 84兩7錢8分, 1백32文이 1元인데 합계 64元1角2仙7厘5毛이다”에서 “當5錢 84兩7錢8分”을 환율 132로 나누어 元으로 환산하면 “64元1角2仙7厘5毛” 된다는 의미이다.

② 부산감리등보(釜山監理騰報, 漢城週報, 1886.8.30)

[1886년] 7월 9일 監理釜山港通商事務 金鶴鎭의 騰報는 이러하다. 『本港의 丙戌年 4월 稅金의 總數를 책으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이런 연유로 치계합니다.』

丙戌年 4월 稅金 總數

수입세: 英銀 6백60원8각3선

수출세: 英銀 6백40원2선

噸稅: 英銀 1천3백72원7각4선

規費: 5원

總計: 英銀 1천3백72원7각4선

여기에서 領回稅 2원3각을 除하면

실제적인 總計는 英銀 1천3백70원4각4선.

위의 문서에서는 당오전(當5錢)이나 일문전(1文錢)이 등장하지 않는다. 1886년 7월에는 이미 감리서에서 관세를 받는 용도로 우리 화폐가 유통되고 있지 않고 영국 은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감리서에서 매일 생산되는 이러한 문서들을 비교하면 부산항을 통한 수출입 규모의

월별, 년도별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천항이나 원산항 등과 비교하면 개항기 항구별 수출입 현황, 수세 규모, 환율의 변동, 화폐의 변천 등 개항기 조선의 사회, 경제상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4.4.2 내륙을 출입한 외국인에 대한 보고

오랜 쇄국 하에서 동양 제국이 외국과 통상하고 외국인의 국내 거주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을 ‘개국(開國)’이라 하고, 이때에 국내 여러 지역 중에서 조약, 협정 또는 황제 선언·정부 선언의 방식에 의하여 특별히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하였거나 개방하기로 약속한 항(港)과 시(市)를 개항장, 개시장이라고 한다. 즉 개항기에 있어서 외국인의 권리란 오로지 개항장 내에서 거주, 영업, 부동산 취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였고, 개항장 밖의 지방, 즉 이른바 ‘내지(內地)’는 행상 또는 유력(遊歷)을 위한 여행만이 허용되는 지역공간에 불과하였다(孫禎陸 2001, 54) 개항기에도 여권이 있었을 뿐 아니라 내지 여행에는 통행권[護照] 휴대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휴대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되었다.

감리가 외국인의 내지 여행을 허가하고, 또 이를 조정에 보고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① 동래부사장계(東萊府使狀啓, 漢城週報, 1886.1.25)

10월 15일 東萊府使 兼 監理釜山港通商事務 金鶴鎭의 장계는 이러하다. 『日本人이 大邸 令內에서 물건을 파는 일 때문에 館에 머무르고 있는 總領事의 屬官 1인과 장사꾼 3인이 2인을 대동, 1백50바리 物種을 가지고 洛東江을 따라

서 바로 大邱의 沙門浦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馳啓합니다」

② 내백등본(萊伯騰本, 漢城週報, 1886.5.31)

동일[1886년 5월 31일] 東萊府使兼 監理釜山港 通商事務 金鶴鎭이 騰報하기를 「지난 달 21일 日本人이 탄 三帆 火輪船 한 척이 館에 도착했는데, 盈德 漂民 10명, 蔚山 漂民 6명이 日本의 雲州 神門郡 鷺浦를 출발하여 長崎縣에 도착했다가 이 배를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糧資와 草料를 급여하고 草料를 만들어 그들의 原籍 고을로 보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馳啓합니다」.

③ 동래부사등보(東萊府使騰報, 漢城週報, 1886.6.28)

동일 東萊府使 겸 監理釜山港通商事務 金鶴鎭의 騰報에 「日本人이 탄 火輪船 한 척이 館에 도착하였기에 즉시 달려가 사정을 물으니 船主 趙溫西와 格軍 60명, 稅關事務 프랑스 사람 帛黎(Pierre)와 그의 식구 3명, 중국고용인 일행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 長崎를 출항하여 오늘 卯時에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仁川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의 말에는 이번에 이 프랑스 사람 帛黎가 本港의 前稅關事務課長 魯富(Robert)와 교대차 왔다고 하는데, 帛黎 일행은 상륙하여 館에 머무르고 있기에 연유를 갖추어 馳啓합니다」고 하였다.

감리서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 지방관인 동래부사가 동래[부산]감리를 겸직하게 됨에 따라 이후 감리서에서 외국인의 내지 통행을 보고하는 문서의 발신자는 ‘東萊府使’ 혹은 ‘萊伯’으

로 되었으며, 문서의 명칭은 ‘騰本’, ‘騰報’, ‘狀啓’로 되어 있다. 다음은 외국인의 내지 여행에 필요한 通行권[護照] 발급대장이다.

「노조존안(路照存案)」(奎 18117)

1888년(高宗 25) 3월부터 1893년(高宗 30) 정월까지 약 6년간 부산항감리아문에서 발행한 路照(또는 護照)의 발급대장이다.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어 6년간 발급된 護照를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닌 듯하다. 기록양식을 보면 우선 護照의 일련번호·발급일자·발급받는 者の 국적 및 성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선지가 명시되어 있다. 발급받는 자들은 모두가 ‘日本商民’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 중 護照를 발급 받은 자가 모두 일본사람이었기 때문인지, 또는 일본 사람들만 따로 모아 놓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기록대로 모두 상인이었는지도 의심이 간다. 완전한 護照발급대장이 아니기는 하나 이를 통해서 당시 일본 사람의 부산 진출규모 및 이들의 활동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4.4.3 부산항을 출입한 선박과 선원 수효 보고

감리부산항통상사무는 매월 지난 달 부산항을 출입한 선박과 선원의 종류와 수효를 조정에 보고하였으니, 그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백장계(萊伯狀啓, 漢城週報, 1887.1.24)

[1887년] 1월 2일 東萊府使兼 監理釜山港通商事務 金鶴鎭의 騰報은 이러하다. 「병술년 [1886] 11월 1일에는 出來한 飛船이 3척인데 沙江이 3인, 格軍이 15인, 下代가 3인이었으며, 兩帆船이 1척인데 船主 1인, 格軍 6인이었습니

다. 3일에는 入歸한 兩帆船이 3척인데 선주가 3인, 격군이 20명이었습니다. 8일에 入歸한 飛船이 3척인데 사공이 3인, 격군이 15인, 하대가 3인이었으며, 兩帆船이 1척이었는데 선주가 1인, 격군이 7인이었습니다. 11일에 入來한 兩帆船이 1척인데 선주가 1인, 격군이 6인이었습니다. 13일에 入歸한 飛船이 3척인데 사공이 3인, 격군이 15인, 下代가 3인이며, 兩帆船이 1척인데 선주가 1인, 격군이 6인이었습니다. 같은 날 出來한 飛船이 2척인데 사공이 2인, 격군이 10인, 하대가 2인이었습니다. 14일에는 出來한 仁川商販火輪船이 1척인데 船主가 1인, 격군이 60인이었으며, 入歸한 元山商販火輪船이 1척인데 선주가 1인, 격군이 70인이었습니다. 18일에는 入歸한 飛船이 3척인데 사공이 3인, 격군이 15인, 하대가 3명이었습니다. 19일에는 出來한 비선이 4척인데 사공이 4인, 격군이 20명, 하대가 4명이었으며, 兩帆船이 5척인데 船主가 5인, 격군이 32명이었습니다. 21일에는 出來한 元山商販火輪船이 1척인데 선주가 1인, 격군이 70명이었습니다. 23일에는 入歸한 인천상관화륜선이 1척인데 선주가 1인, 격군이 60명, 留館書記는 淺山·顯藏이었습니다. 28일에는 入歸한 飛船이 兩隻인데 사공이 2인, 격군이 10명, 下代가 2명이었으며, 兩帆船이 5척인데 선주가 5인, 격군이 32명이었습니다. 이상 出來한 것은 飛船이 9척이고 兩帆船이 7척이고 仁川商販火輪船이 1척이고 元山商販火輪船이 1척이며, 入歸한 것은 飛船이 11척이고 兩帆船이 10척이고 인천상관화륜선이 1척입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馳啓합니다.」

② 내백장계(萊伯狀啓, 漢城週報, 1887.7.4)

[1887년] 5월 9일 東萊府使 兼 監理釜山港 通商事務인 李容植이 지난 달에 출입한 선박의 수효를 기록하여 등첩으로 보고해 왔기에 연유를 갖춰 馳啓합니다.

兩帆船 1척은 지난 달 1일 출항, 飛船 3척은 2일 출항, 仁川商販 火輪船 1척은 3일 입항, 元山商販 火輪船 1척은 4일 출항, 兩帆船 1척은 5일 입항, 飛船 2척은 5일 출항, 飛船 2척은 9일 출항, 兩帆船 1척은 11일 출항, 兩帆船 1척은 13일 입항, 仁川商販 火輪船 1척은 13일 출항, 兩帆船 1척은 14일 입항, 飛船 4척은 14일 출항, 飛船 1척은 16일 입항, 飛船 2척은 16일 출항, 兩帆船 1척은 16일 출항, 兩帆船 1척은 17일 출항, 兩帆船 2척은 23일 입항, 飛船 1척은 23일 출항, 仁川商販 火輪船 1척은 24일 입항, 飛船 2척은 25일 입항, 元山商販 火輪船 1척은 25일 출항, 兩帆船 2척은 26일 출항하였다.

이상 입항한 飛船은 3척이고 兩帆船은 5척이며 仁川商販 火輪船은 2척이고 출항한 飛船은 14척이고 兩帆船은 6척이고 仁川商販 火輪船은 1척이고 元山商販 火輪船은 2척이었다.

위 문서의 종류는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인 “狀啓”이다. 동래부사가 감리 부산항통상사무를 겸직하였으므로 감리서에서 부산항을 출입한 선박과 선원의 종류와 수효를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의 발신자가 동래부사인 “萊伯”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당시 관보 역할을 했던 『한성주보』에 실려 있는데, 부산항 출입선박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분석해 보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무역선의 동향이나 선박

의 발전상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관 감독자로서 감리의 기능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성채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래관첩내안(東萊關牒內案) (奎 18118)**  
1889년(고종 26)에서 1895년까지 동래감리서와 의정부·호조·친군영 등 중앙의 각 기관 사이에 오고간 관문을 동래감리서에서 날짜순으로 기록한 책이다. 주된 내용은 동래항 출입선박에 대한 세금징수, 매월 稅簿 및 當年稅金總數修成冊上送, 항구소요경비의 지출, 항구세의 상납, 미납稅銀에 대한 독촉 등에 관한 것이다. 이밖에 동래항에서 설립한 海商社의 목적, 상선래박시 무뢰배·官隸輩들의 토색, 各主人 名色の 잡세혁과, 利運社에 내지를 항해할 수 있는 특권부여, 갑오농민전쟁 진압에 참가한 일본해군의 생존자 勞問 및 사망자 慰恤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② **동래항보첩(東萊港報牒) (奎 17867의 2)**  
1896년(건양 원년)에서 1905년(광무 9)까지 동래감리서와 외부대신 간에 오고간 7책의 보고서와 3책의 훈령이다. 주요한 내용은 동래감리서의 업무상황으로서 수세액과 그 세목보고, 관리의 부임 파견, 봉급지급 상황과 그 비용, 일본상인의 米粘運搬과 米稅, 이로 인한 무역상황 및 포경세와 포경상황, 외국인들의 토지 개간 및 매매금지 및 암매상황, 러시아군의 절영도 석탄고 설치요구, 한인객주의 조계지 안의 상사 설립, 연해·강로의 선박회사 지점설치, 경부철로공사의 관계기사, 통신업의 일본위임 등이다. 그 당시의 개항장의 무역상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도

움이 되는 자료이다.

#### 4.5 목민 기록: 목민관으로서의 감리

『萊伯牒報』의 발신자 ‘東萊府使 兼 監理 釜山港通商事務 金學鎭’에서 알 수 있듯이, 동래부사가 부산항 감리를 겸임한다. 다음은 관내 백성의 굶주림을 구휼하는 지방관으로서의 감리의 역할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① **내백첩보(萊伯牒報, 漢城週報, 1886.5.17)**  
동일[1886년 5월 17일] 東萊府使 兼監理 釜山港通商事務 金學鎭이 牒報하기를 『本府의 饑民에게 等分하여 주도록 하고 緣由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였는데, 흉년에는 民情이 春窮을 더욱 느끼므로 愁慘한 情狀은 진실로 참을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駐紮本港淸國正理事官 劉家○이 百姓의 굶주림을 軫念하여 出捐하였는데 僥倖이 金貨·洋銀錢 200圓을 貿易하여 日本米 100包를 얻어서 나누어주었으나 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因하여 仁川이 主幹하게 하고, 中國으로 돌아갔으며, 署理 張變堯에게 대리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달 24일에는 감리서에 境內의 굶주리는 家口와 유리결식하는 자들을 불러모은 후에, 張變堯를 邀致하여 한데 모아 놓고 分賑한 것은 惟獨 賑肌하는데 관계된 것만이 아니요, 그것은 善을 顯彰하는 도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쓸데 없이 泯默하므로 그 되를 헤아리고, 品等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굶주린 家口와 유리결식하는 자의 수효를 成冊한 연유를 갖추어 上送하여 馳啓합니다.』 라고 하였다.

동래부사로서 부산감리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의 『부산항감리아문일록』에서도 보듯이, 부산감리는 주로 동래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 4.6 일록(日錄)

일록은 기관에서 매일매일의 직원의 동향과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일지류를 말한다. 부산감리서에서도 일지를 작성하였으니, 『釜山港監理衙門日錄』이나 『釜署日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① 부산항감리아문일록(釜山港監理衙門日錄, 國史編纂委員會, 1985, 596)

戊子五月初一日 壬子 晴 西曆 一千八百八十八年 六月 十日 日曜  
始編日錄, 監理 李容植 在萊府, 幫辦 兪箕煥 書記官 閔建鎬 本年 二月 呈由歸家 權在衡 金炳澈 李玄植 本年 四月 呈由歸家 警察官 朴琪淙 仕進 兪箕煥

위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各司謄錄) 경상도편』에 실려 있는 부산항감리아문일록(釜山港監理衙門日錄)의 맨앞에 실려 있는 1888년 5월 1일(음)의 기사이다. 일록을 기록하는 순서는 年[干支로 표시]月日·日辰·天氣·西曆 등을 앞에 적고 이어 전직원의 仕進, 휴가 등 모든 동향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기록자 이름을 적었다. “始編日錄”으로 미루어 부산항감리아문의 일록을 처음 만드는 듯하다. 위 기사를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무자년 [1888년] 5월 1일 임자일, 갠. 서기 1888년 6월 10일 일요일이다.

비로소 일록을 적는다. 감리 이용직은 동래부에 있고, 방관 유기환,

서기관 민건호는 올해 2월 휴가로 집에 갔다.

[서기관] 권재형, 김병철,

이현직은 올해 4월 휴가로 집에 갔다. 경찰관 박기중은 출근[仕進]했다.

유기환

이 날은 일요일이었으므로 경찰관 박기중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은 모두 휴가 중이며, 동래부사와 겸직인 감리는 동래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고향에 왕래하는데 여러 날 걸리기 때문인지 관리들의 휴가가 상당히 길었다고 생각된다. 고향이 전라도 해남인 민건호는 2월에 휴가 가서 5월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5월 2일자 일록에 “監理 李 在萊府, 幫辦 兪 書記官 權 金 警察官 朴 仕進”으로 보아 휴가갔던 방관 유기환, 서기관 권재형과 김병철은 돌아와 출근했고, 경찰관 박기중 역시 출근했다. 5월 1일자 일록은 이튿날인 5월 2일 월요일에 출근하여 휴가에서 돌아 온 방관 유기환이 기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날은 서기관이 기록하기도 했다.

위의 일록을 모아 책으로 편찬한 것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釜山港監理署日錄』이다.

『釜山港監理署日錄』1-5((奎18148의1-v. 1-2)은 1888년(고종 25)에서 1904년(광무 8)까지의 것으로 필사본이다. 이 일록은 監理署가

폐지되기 전까지의 부분을 모은 것이다. 原本의 表題는 제1·2책이 『釜署日錄』(內題는 釜山港監理衙門日錄), 제3~8책이 『日錄』(內題는 釜山監理署日錄), 제9책이 『本署日錄』(內題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체제는 年月日·日辰·日氣·西曆 등을 앞에 적고, 이어 전직원의 仕進, 휴가 등 모든 동향을 기록한 다음, 外部를 비롯 法部·宮內府 등 중앙관아와 嶺營·南營 등 지방 상급기관과 각 海關 각국 영사관과의 去報·去函·去訓·去指·去電·來訓·來牒·來照·來指·來電 등의 내용을 略記했으며 같은 날짜라도 매건마다 앞에는 大字로 시작하였다. 특히 交涉通商과 收稅·經費支撥 등 재정관계가 중심이며 中央官衙 특히 議政府·統理機務衙門·戶曹와의 거래문건이 많이 들어 있다. 매월 초에는 前月の 收稅狀況을 위에 언급한 각 기관에 보고했으며 경비 지급사항 중에는 駐日領事館과 親軍營의 運營費, 電報費 및 海關總稅務司 그리고 外交顧問의 月給 등이 포함되어 있다. 防穀令에 관련된 기록과 東萊商人·日商人 및 韓日兩國漁民의 분구내용도 많이 엿볼 수 있다. 제9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더욱 간략하다. 舊韓末 監理署의 구실과 釜山監理署 관할의 사무 및 한일교섭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5. 맺음말

이 연구는 개항장이 된 이후 급격한 변동을 겪었던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공간변모와 관련한 기록 연구의 일환으로 개항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감리서의 설치과정 및 활동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감리서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개항장인 부산항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리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리서의 직제, 설치와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감리서 관련 칙령에 규정된 감리서 기능에 따라 감리서 업무를 구분하면, 감리서 업무는 영사관 업무, 재판소 업무, 경무서 업무, 해관 업무의 넷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리의 위상은 개항장에서 각국 영사와 교섭하는 외교관, 개항장의 재판소·경무서·해관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아울러 감리서 창설 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감리는 지방관이 겸무하므로 목민관의 업무가 추가된다.

그리하여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기록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크게 ① 교섭 기록, ② 재판 기록, ③ 경무 기록, ④ 통상 기록, ⑤ 목민 기록의 다섯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외에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생산하는 일지류인 ⑥ 일록(日錄)을 추가하면 감리서 기록은 여섯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각 유형별로 기록을 살펴 본 결과 감리서의 특성이 가장 드러나는 기록은 교섭기록과 통상 기록이다. 전자를 통해 일본은 명분을 만들어 절영도를 점유하고자 하는 반면,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조선 정부의 방어 자세 등을 통해 긴장 관계를 볼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서도 부산항에 드나드는 선박과 선원, 외국인, 해관세 규모, 환율, 유통 화폐 등 당시의 사회상과 경제상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다.

감리서가 생산하는 문서의 작성자는 일록을 통해 추정해 볼 때 서기관이나 방판이며, 동래

부사가 부산감리를 겸하므로 문서의 발신자는 대부분의 경우 “동래부사”나 “萊伯”으로 되어 있고, 문서의 종류는 지방관이 국왕에게 보고하는 “狀啓”나 “牒報” 또는 “騰報” 등으로 되어 있다.

부산항의 개방과 관련한 조약과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 등에 관한 칙령은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나 한성순보, 한성주보 등의 관보에 전제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회도서관에서 편한 『한말근대법령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다. 감리서에서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일부는 한성순보, 한성주보에 게재되어 있다.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나 문서철의 원본은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목록이나 해제만 제공되고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고 있다. 규장각 소장 문서들 가

운데 일부 기록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편한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에 원문으로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리서 관련 기록들 가운데 국역된 기록은 『고종실록』뿐이어서 개항기와 감리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의 국역과 원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록학 연구가 주로 현대 기록 중심, 현대 기록관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항기의 감리서에 관한 맥락 정보와 감리서의 생산, 접수기록을 감리서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지워 기록의 유형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록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1972.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海關案』,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국사편찬위원회. 1985. 『各司騰錄 17: 慶尙道篇 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 서울: 두산동아.
- 金敬泰. 1972. 開港直後の 關稅權 回復問題: 釜山海關 收稅事件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8, 693-723.
- 김기혁. 2008. 『釜山古地圖』, 부산: 부산광역시.
- 金義煥 編著. 1969. 『釜山の 古蹟과 遺物』, 부산: 安龍福將軍記念事業會.
- 김태영, 이광로. 1988. 韓國開港場의 外人館研究(II): 釜山 및 馬山港. 『大韓建築學會論文集』 4(3), 67-77.
- 김호범. 1991. 朝鮮後期 貨幣制度의 改革과 植民地 貨幣金融體制의 確立. 『釜山商大論集』 62, 103-136.

- 민건호. 2008. 『海隱日錄 I』, (김동철 외 역). 부산 : 부산근대역사관(원전발행년 미상).
- 민희수. 2012. 조선 開港場 監理署의 성립 과정(1883-1886). 『동북아역사논총』 36, 139-186.
- 孫禎睦. 2001. 『韓國 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서울: 일지사.
- 宋炳基, 朴容玉, 朴漢高 編著. 1970.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서울: 國會圖書館.
- 송정숙. 2011.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73-298.
- 윤광운, 김재승. 2006. 부산해관(1883~1905)에 관한 무역사적 연구. 『무역학회지』 31(1), 199-221.
- 이정수, 김희호. 2006.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李鉉淙. 1975. 『韓國開港場研究』, 서울: 일조각.
- 황은수. 2010. 개항기 한중일 정기 해운망과 조선상인의 활동. 『역사와 현실』 75, 201-245.

- 『高宗實錄』. <[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고종순종실록](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고종순종실록)>.
-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gj>>.
- 『독립신문』. <[http://gonews.kinds.or.kr/OLD\\_NEWS\\_IMG3/DLD/DLD18960919u00\\_01.pdf](http://gonews.kinds.or.kr/OLD_NEWS_IMG3/DLD/DLD18960919u00_01.pdf)>
-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 李沂. 『海鶴遺書』.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漢城旬報』. <[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
- 『漢城週報』. <[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1972. *Diplomatic Documents of the late Joseon Dynasty*.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Hwang, Eun-soo. 2010. "Network of Regular Sailing Routes that Connected Korea, China and Japan During the Period of 'Treaty-opened ports', and the Activities of the Joseon Merchants, *Yoksa Wa Hyonsil*, 75, 201-245.
- Kim, Eui Hwan. 1969. *Historical Spot and Relic of Busan*, Busan: Ahnyongbok Commemoration Service Society.
- Kim, Ho-Boem. 1991.12. "The Reformation of Mometary System in the Hater Period of Chosun and the Establishment of Colonial Financial System." *Buiness College Journal* 62, 103-136.
- Kim, Ki Hyuk. 2008. *Old Maps of Busan*,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 Kim, Kyung-Tae. 1972. "The Restoration of Tariff-right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Case of 'Pusan Tariff Incident'." *The Journal of Korea History* 8, 693-723.
- Kim, Tai-Young & Lee, Kwang-No. 1988. "A Study on the Foreigner's Residential Buildings of an Open Port in Korea: Pusan and Masan Por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4(3), 67-77.
- Min, Geon-Ho. 2008. *Haeun Ilrok 1* (Kim, Dong-Chul et al., Trans.). Busan: Busan Modern History Museum. (Original Work Published(n.d.)).
- Min, Hoisoo. 2012.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intendent Office(Gamriseo) at the Treaty Ports in Korea, 1883~1886."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36, 139-186.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85. *Gaksa-Deungrok, Documents of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6. *A Double Occasion for Currency and Economic Activity*, Seoul: Doosan Dong-A.
- Son, Jeong-Mok. 2001. *A Study on the Change Processes of Urban Areas in the Opening-port Period of Korea*, Seoul: Iljisa.
- Song, Byeong-Gi, Park, Yong-Ok, & Park, Han-seol. 1970. *The Source Book on the Modern Legislati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 Song, Jung-Sook. 2011. "As an Open Port, Busan Port and Related Record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73-298.
- Yi, Hyoen-jong. 1975. *A Study on the Open Port in Korea*, Seoul: Ilchokak.
- Yun, Kwang-Woon, & Kim, Jae-Seung. 2006. "A Historical Study on Busan Maritime Customs in 1883-1905." *Journal of Korea Trade* 31(1), 199-221.
- Dongrip Shinmoon, The Newspaper of Independence.*  
 <[http://gonews.kinds.or.kr/OLD\\_NEWS\\_IMG3/DLD/DLD18960919u00\\_01.pdf](http://gonews.kinds.or.kr/OLD_NEWS_IMG3/DLD/DLD18960919u00_01.pdf)>
- Hanseong Joobo, The Weekly Bulletin of the Capital.*  
 <[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
- Hanseong Soonbo, The Ten-day Report of the Capital.*  
 <[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한성순보,한성주보)>.
- Institute of Kyuganggak Korean Studies. <<http://e-kyujanggak.snu.ac.kr/>>.
- Korean History On-line. <<http://www.koreanhistory.or.kr/>>.
- Seungjeongwon Ilgi,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n History Database.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The Annals of the King Gojong.*

〈[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고종순종실록](http://gate.dbmedia.co.kr/pusan/korea.asp?url_name=고종순종실록)〉.

*The History of the King Gojong's Period.*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n History Database. 〈<http://db.history.go.kr/url.jsp?ID=gj>〉.

Yi, Kee. *Haehak Yooseo*. DB of Korean Classics.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